

범법의 원인과 준법의 이유

박 광 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범법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들과 준법의 이유를 규명하는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범법에 관한 연구들은 범법행위의 원인에 주목하는 반면, 준법에 관한 연구들은 이유에 주목한다. 범법행위는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하여야 할 행위이고, 준법행위는 이유를 파악하여 육성하여야 할 행위이기 때문이다. 강제성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범치는 매우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사회운영방안이다. 반면에 자발성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범치는 많은 부수적인 사회적 이득을 창출한다. 따라서 무엇이 자발적인 준법행위를 창출하는 이유인지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준법의 이유에 관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여 준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강력히 퍼력하고 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 그리고 사법부나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권위인정이 중요한 준법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범법과 준법은 상호배타적인 개념들이다. 준법에 관한 법적, 학문적 관심과 범법에 관한 관심은 다소 다른 철학적 배경을 가진다. 범법은 처벌해야 할 행위이다. 만약 범법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법은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한다. 그런데 처벌이란 처벌대상의 물리적, 정신적 손실을 의미하므로 정확한 범법의 실체 혹은 책임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법에 대한 법적, 학문적 관심은 범법의 “원인(cause)”에 주목한다.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결정된다고 간주되며 때문이다. 원인과 간혹 혼동되는 개념이 “이유(reason)”이다. 법학에서는 이유를 “동기(motive)”라고 부른다. 현대 형법, 범죄학, 법심리학 등은 범법의 원인에 주목하는 반면, 범법의 이유나 동기는 이차적인 관심사로 간주한다. 범법의 이유나 동기는 사실확인(i.e., 행위자 확정)을 위한 상황적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만, 법적용의 핵심적 요소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유나 동기는 책임의 소재가 되지 않는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학문이 모두 원인에 주목하는 반면, 준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유’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법이나 학문이 준법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이 준법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활성화하므로서 자발적인 준법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탈세가 많이 자행된다고 해서 세무사찰만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단속에 소모되는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하여 사회의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보다는 세법이 어떤 경우에, 왜 자발적으로 지켜지는지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요인을 주장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강제성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범치는 매우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사회운영방안이다. 반면에 자발성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법치는 많은 부수적인 사회적 이득을 창출한다. 따라서 무엇이 자발적인 준법행위를 창출하는 이유인지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준법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도외시되어 왔다.

특히 심리학이 준법의 이유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할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법의 기본적인 인간관 혹은 행위에 대한 자유의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법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론적 근거는 범죄의 고전이론이다. 범죄의 고전이론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자유의지에 의해 행위하는 주체로 간주한다. 범죄자는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행위의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므로 그의 행위에 대한 원인은 그 자신의 의지이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 자신에게 귀착된다고 본다. 반면에 심리학은 전통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심리학은 범죄행위가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의지는 다시 과거의 경험, 학습, 생리현상, 뇌구조, 등에 의해 생성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심리학이 조망하는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제한적 의지’이다.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는 의지 혹은 욕구를 제한하고 결정하는 보다 내재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범죄행위에 대한 법과 심리학의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차이는 두분야가 협력하여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큰 장애가 되어왔다. 법이 심리학의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면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의 기본적인 전제가 유실된다. 반면에 심리학은 순수하게 자유의지에 의하여 행위하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법이 정신장애(insanity) 현상을 인정하고, 범법자의 처벌에 그것을 고려하는 것은 범법행위에 대한 심리학적인 결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신장애 이외에도 법은 여러 분야에서 심리학의 실증적 연구들을 적극적

으로 수용하고 있다(박광배, 1995).

심리학은 법의 기본적인 인간관 혹은 행위에 대한 자유의지론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심리학이 법의 기본적인 인간관을 수용하는 한 방법은 준법의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다. 준법은 합목적적 행위로 간주된다. 준법에 관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손실을 극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도덕관 및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혹은 정부나 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준법한다고 가정한다. 즉, 미래에 달성할 목표 혹은 목적을 위하여 준법행위를 한다는 관점이다. 그 미래는 반드시 먼 장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목표와 목적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다. 법과 심리학은 모두 준법행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목적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로 개념화하기 때문에 준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심리학이 심각한 기본전제의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심리학이 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준법행위의 이유, 그리고 준법성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범죄의 원인론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고, 그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알려져 왔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간략히 요약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그러나 준법의 이유에 관한 연구들은 특히 심리학에서 비교적 생소한 것들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주로 준법의 이유에 관한 문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법법의 원인

범죄이론은 크게 두부류로 나뉘어진다. 첫번째 부류는 18세기의 유럽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Thomas Hobbes, Jeremy Bentham, Cesare Beccaria 등의 철학적 범죄관에 기초한 소위 고전학파(classical school)의 범죄이론이다. 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은 현재도 법제도나 교정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남기고 있다. 두번째 부류는 유럽에서 Cesare Lombroso, Enrico Ferri, Raffaele Garofalo 등의 범죄학자들로부터 시작된 실

중학파(positivist school)이다. 고전학파와 실증학파의 범죄이론들은 범죄행위와 범죄인에 대하여 서로 매우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상반된 견해들에 기초하고 있다. 고전학파는 범죄행위에 대한 자유의지론을 주장하고 행위 자체가 그 행위에 대한 원인이자 결과라고 보는데 반하여, 실증주의 이론들은 범죄행위는 그 행위와 별개로 존재하는 특정한 원인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라고 보는 결정론이다. 실증주의 이론들 중에서 사회학적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의 결정요인이 행위자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들이고, 생물학적 이론들은 주로 그것이 행위자의 내부에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인 반면, 심리학적 이론들은 외부적 결정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을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간주하는 관점들이다.

고전이론

범죄의 고전이론가들은 범죄행위는 그 행위의 득과 실을 비교하는 합리적인 자유의지(free will)에 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고전이론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범죄가 행해지는 이유는 한 개인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범죄수단이 다른 비범죄적인 수단보다 정신적, 물리적 노력과 에너지를 적게 요구하고, 또한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이론에서는 범죄자의 교도나 생생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범죄행위는 합리적인 경제행위라는 점에서 다른 행위들과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고, 범죄자도 득과 실을 가늠하는 경제적인 일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경제성은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고전이론에 의하면 처벌의 대상은 범죄행위이고 범죄자가 아니다(punishment fits the crime). 이말은 예를 들어서 전과 10범의 흉악범이 100원짜리 껌을 훔치다 붙잡혔다면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은 100원짜리 껌을 훔친 죄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며 전과 10범이고 흉악범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도 및 생생의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처벌의 대상을 범죄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재판에

서는 ‘정당한 댓가(just deserts)’에 부합하는 처벌이 강조된다.

범죄에 대한 고전이론은 몇 가지의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첫째는 폭력과 부정은 특이한 혹은 비정상적인 인간행동이 아니라 인간사에 언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존하는 아주 일반적인 인간행위라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들 속에 범죄성(criminality)을 가진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조금씩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범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범죄행위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는 고통의 회피와 쾌감의 추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행위의 이면에 있는 동기는 그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다른 모든 행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각기 다른 종류의 범죄들도 인간의 가장 일반적이고 범세계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고 간주된다. 어떤 범죄를 행하느냐는 어떤 범죄가 가장 노력을 덜 요구하고 실행하기 쉬우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이론은 중범죄, 경범죄, 대물범죄, 대인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조직범죄, 파렴치 범죄, 등의 범죄구분을 무의미하다고 보며, 이러한 구분은 오히려 범죄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범죄구분은 법적용을 위한 실용성 때문에 이용되는 것이지, 그들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를 벌할 수 있는 철학적, 법적 근거는 범죄행위가 범죄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라고 보는데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전이론의 핵심적 범죄관이다. 그러나 고전이론은 왜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노년기까지 반복적으로 범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은 일회적인 범죄행위 이후에 다시 그러한 반사회적인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지, 왜 십대 후반에 범죄 가능성이 급증했다가 이십대가 되면 급격히 감소하는지, 왜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를 더 많이 범하는지 등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심각한 한계를 가지는 이론이다. 이러한 고전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실증주의 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학적 이론

범죄의 사회학적 이론들은 고전이론과는 달리 범죄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이익보다는 그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범죄동기도 폐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와 같은 개인적, 자연적 균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균원을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학적 이론들은 크게 문화이탈론(cultural deviance perspective), 사회긴장론(strain perspective), 사회혼란론(social disorganization perspective)으로 나뉘어진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문화이탈론은 범죄행위는 사회가 어떤 행위를 이탈된 행위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되기도 하고, 비범죄가 되기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Sellin, 1938; Kornhauser, 1978; Elliott et al., 1985; Lemert, 1972). 따라서 이 관점에 의하면 본질적 혹은 절대적인 범죄행위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범죄행위는 특정한 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므로 이것을 ‘사회학적 상대론(sociological relativis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커다란 사회속에 여러개의 하부문화(subculture)들이 존재한다고 보고(Wolfgang & Ferracuti, 1967; Nietzel, 1979), 어떤 개인이 자신이 속한 하부문화의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보다 큰 통합사회에 의해 규범에서 이탈한 것으로 간주될 때, 즉 하부문화의 규범과 통합사회의 규범이 상충할 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Vold, 1979).

사회긴장론(Cohen, 1955; Merton, 1968)은 문화적으로 주입된 이상적인 삶의 질과 현실적인 삶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이 괴리가 긴장 혹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러한 긴장의 해소를 위하여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문화적으로 주입된 이상적인 삶이란 특히 산업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의미한다. 그러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심각한 괴리와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괴리와 긴장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적응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을 때 소위 ‘아노미(anomie)’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아노미현상이란 Durkheim(1951)에

의해 고안된 개념으로서 모든 사회/문화적인 가치관과 인습, 규칙, 법 등을 신뢰하지 않는 물가치적 상태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탈규범의 상태이다. 이러한 물가치적인 상태는 자살 혹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관점에서는 범죄는 구조적인 결함을 지닌 사회속에 사는 개인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적응노력의 일환이다(Cloward & Ohlin, 1960).

사회혼란론은 사회통계적 사실로부터 유추된 범죄 이론이다. 즉, 특정한 지역의 교육수준, 경제수준, 실업률, 지역적 기반을 둔 사회단체의 숫자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 지역내에서의 범죄발생의 양상 또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범죄의 양은 해당 지역사회가 조직화된 정도 혹은 안정된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학교, 교회, 시민단체, 등에 의하여 지역사회가 조직화되고 안정될수록 사회와 개인간의 유대(bond)가 강화되고, 그 강화된 유대를 통하여 사회가 개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수단과 기능이 증가하여 범죄가 감소될 것이라는 추론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우선 개인들을 교육시키고 사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어야하며, 교육과 사회화 이후에도 계속 감시, 감독,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관점의 핵심내용이다(Hirschi, 1969).

생물학적 이론

범죄행위와 같은 행동특성 혹은 행위방식의 유전성 여부를 탐구하는 학문분야를 ‘행동유전학(behavioral genetics)’이라고 부른다(Falconer, 1981; Plomin et al., 1990). 행동유전학의 발달에 의해서 범죄적 성향 혹은 가능성이 유전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쌍동이 연구들은 쌍동이 쌍들의 상관계수를 분석한다. 이 상관계수는 쌍동이의 각 짹이 범죄성(criminality)에서 얼마나 서로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행동유전학의 연구들은 일란성 쌍동이의 일치도가 이란성 쌍동이의 그것보다 적어도 2배 더 크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Christiansen

(1977a)은 다양한 국가에서 수행된 여러개의 쌍동이 연구를 종합한 결과 일란성 쌍동이의 한쪽이 범죄자일 때 다른 짝도 범죄자일 확률은 평균 0.69, 이란성 쌍동이의 그것은 0.33을 산출하였다. 이 두가지 확률의 비율은 여자쌍동이들에서는 3.2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자들이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남자들보다 더 강력한 유전적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Raine, 1993).

부모들은 쌍동이들이 일란성일 때 이란성일 때보다 더 비슷한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Allen, 1976). Grove, Eckert, Heston, Bouchard, Segel, & Lykken(1990)은 태어난 직후 헤어져서 자라난 32쌍의 일란성 쌍동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을 측정하고, 쌍동이 쌍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일란성 쌍동이들은 청소년기의 반사회성에서는 유전가능성 추정치 0.41를 보여주었고, 성인기의 반사회성에서는 유전가능성 추정치 0.28을 보여주었다. Christiansen (1977b)도 헤어져서 자라난 8쌍의 일란성 쌍동이들로부터 매우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 결과들은 환경의 동일성이 배제된 일란성 쌍동이들도 높은 범죄성 일치도를 보인다는 것, 따라서 앞서 동일한 가정에서 자라난 일란성 쌍동이들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산출된 높은 유전가능성 추정치가 환경의 동질성 때문이 아니라 유전인자의 동질성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일련의 쌍동이 연구들은 범죄 행위가 유전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입양아들은 생부모와 양부모를 가지므로 유전의 영향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장점을 가지는 연구대상이다. 만약 입양아들의 범죄여부가 생부모의 범죄여부에 따라 변동하고, 반면에 양부모의 범죄여부에 따라서는 변동하지 않는다면 범죄행위는 환경적인 영향(양부모)보다 유전적인 영향(생부모)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입양아 연구들은 양부모의 범죄여부에 따라서는 입양아의 범죄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

는 반면에 생부모의 범죄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Mednick, Gabrielli, & Hutchings, 1984). 따라서 입양아의 범죄여부는 양부모보다는 생부모의 범죄여부와 더 큰 관련성을 가지며, 결국 유전적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범죄종류를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이러한 양상은 비교적 사소한 대물범죄(property crime)에서만 발견되었고, 대인범죄(person crime) 혹은 폭력성 범죄(violent crime)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Raine(1993)은 사소한 대물범죄는 유전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는 반면, 강력범죄는 그렇지 않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Raine(1993)은 덴마크, 스웨덴, 미국 등지에서 1974년부터 1989년까지 발표된 15개의 입양아 연구들을 개관하였는데, 거의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진화론적인 관점

Darwin(1859)의 진화론에 의하면 환경에 적응하고 자손을 번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특성이나 자질을 가진 개체는 그렇지 못한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고, 따라서 후세로 갈수록 그러한 특성이나 자질을 가진 개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며, 그러한 특성이나 자질 자체도 점점 더 강화되고 발전하여 결국 종(種)의 진화(evolution)가 이루어진다고 한다(Dawkins, 1989). 만약 이러한 진화론적인 논리가 타당하다면, 부적응적인 사회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인류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Raine(1993)에 의하면 범죄행위 혹은 반사회적 행위는 개체의 번식과 종(種)의 번성확률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범죄행위가 인류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종(種)이 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보자 한다.

번식 적합성(reproductive fitness): 개체들은 자손의 번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 한가지의 생식전략을 택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적은 숫자의 자손을 생식해서 주어진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길러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많

은 숫자의 자손을 다산하여 특별한 양육의 노력없이 방치하는 것이다. 전자는 소수의 암컷만을 확보하면 되므로 생식은 쉽지만 노력이 투입된 양육이 필요하고, 후자는 생식은 어렵지만 양육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는 전략이다. 이 두가지 중 한가지를 해낼 수 있는 개체와 종(種)은 번식적 합성이 있고, 따라서 도태되지 않고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게 된다(Wilson, 1975). 그런데 두가지 전략 중 후자(다산)를 택하는 개체는 충분한 암컷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많은 자원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장기 간에 걸친 양육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자원과 능력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자손들을 생산해내야 하므로 수컷들은 암컷들을 속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즉, 종족번식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기와 기만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기성(selfishness): 성공적이고 유능한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투쟁에서 무자비한 이기적 존재이다(Dawkins, 1989). 다른 새의 둉지에 알을 낳는 뼈꾸기의 알은 주인새의 알보다 약간 일찍 부화하는데, 뼈꾸기 새끼는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주인새의 알을 둉지밖으로 굴러 떨어뜨려 깨버린다고 한다. 또한 남극에 사는 황제펭귄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을 먹이로 하는 물개가 물속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옆의 동료펭귄을 물속으로 밀어 넣어 본다고 한다. 이러한 이기적, 반사회적 행동은 개체의 번식 적합성을 증가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효율적으로 잘 구사하는 개체의 유전자는 점점 더 왕성하게 번성하게 된다.

동족선택(kin selection):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때때로 희생적인 이타행동을 하기도 한다. 새들은 위협이 닥치면 큰 울음소리를 내어 근처의 다른 동료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러한 행동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어미새는 새끼를 위협에서 구하기 위하여 날개가 부러진 시늉을 하여 악탈자의 주의를 자신에게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타적인 행위를 Hamilton(1964)은 동족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자신을 희생하여 더 많은

동족을 생존시킬 수 있을 때 종(種)의 번식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희생적인 이타행위가 진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곁보기에 이타적인 행위도 사실에 있어서는 ‘이기적인 유전자(Dawkins, 1989)’가 자신의 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하는 한 방책이다. 유전자의 본질적인 특징인 이기성은 필요하다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개체의 희생도 불사하는 무자비성을 가진다.

호혜 이타성(reciprocal altruism):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게 이타적인 도움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미래에 그 은혜를 갚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Trivers, 1971). 그러나 이러한 무시적인 동의와 기대에 의해서 도움행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때때로 상대방은 그 기대를 배신할 수도 있다. 청소고기는 큰 고기의 입속에 살면서 먹이찌꺼기를 청소해 주는 공생관계를 유지하는데, 때때로 큰 고기가 청소고기를 먹이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호혜이타성 혹은 무시적인 동의의 파기는 특정한 청소고기를 미래에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청소고기가 많아서 특정한 청소고기의 존재가 큰 의미가 없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 이때에는 청소고기를 먹어 치우는 것이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호혜이타성의 파기가 범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진화의 기본적인 원칙들(번식 적합성, 이기성, 동족선택, 호혜이타성)은 개체가 자손의 번식과 종(種)의 번성 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직하고 정당한 전략을 성실히 수행하기 보다는 범죄 행위 혹은 반사회적 행위(예를 들어 호혜기대의 배신)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심리학적 이론

범죄자들의 성격특질 중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반사회적 성격(antisocial personality)’이다. Hare(1983)에 의하면 교도소 혹은 기타 수용기관에 수감된 범죄자들 중 약 39-75%가 이 진단준거에 부합하는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들이라고 한다. 반사회성

의 성격특질을 지닌 사람들 중에 80%가 남자이고 (Goleman, 1987), 경범죄자들보다는 강력범죄자들 중에 이 성격특질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McCord, 1982). 이들은 불안수준(anxiety level)과 각성수준(arousal level)이 일반인들보다 낮아서 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한가지 자극에 대하여 더 빨리 실증과 지루함을 느낀다고 한다. 반사회적 성격은 뇌의 좌반구의 결합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견해가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Hare & McPherson, 1984). 이러한 기질적인 설명 이외에 Buss(1966)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반사회적 성격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부모가 아동을 지나친 냉정함과 거리를 가지고 대하고,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상과 별을 비일관되게 행사하는 경우 아동에게 이러한 성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반사회성의 성격특질을 골자로 하는 성격이론이 범죄 이론으로서 가지는 취약성은 이러한 성격특질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범죄 전반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이 아니라 특정한 범죄자들의 속성을 기술하는 이론으로 간주된다.

범죄행위와 반사회적인 비행을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의 결합에 의해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Eysenck(1977)이다. Eysenck의 이론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양심(conscience)’인데, 이 양심이란 다름 아닌 고전적으로 조건화된 일련의 정서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자들은 이러한 조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양심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므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왜 고전적 조건화가 잘 안되는 것일까? Eysenck는 사람들 사이에 선천적인 각성수준(arousal)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선천적으로 각성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고전적 조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성격적으로는 외향성(extraversion)이 된다고 한다.

학습(learning)은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소위 ‘도구적 학습(instrumental learning)’이라고 불리우는 기제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고전

적 조건화는 유기체가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연합되는 현상인 반면에, 도구적 학습은 유기체의 의식적 반응(response)과 그에 수반되는 보상(reward) 혹은 강화(reinforcement) 사이에 연합이 생기는 현상이다. 부정적인 행위를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정적 강화가 주어져서 그러한 소극적 회피행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소극적 회피학습(passive avoidance learning)’이라고 부른다. Lykken(1957)은 반사회성의 성격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소극적 회피학습에서 결합을 보인다는 실험결과를 보고하였다. 반사회성의 성격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소극적 회피학습에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결합을 보이는 것이 Eysenck의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각성수준이 낮기 때문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chacter & Latane(1964)는 Lykken의 실험과 거의 동일한 실험을 하였는데 그들은 반사회성집단과 일반인집단을 다시 각각 절반씩 나누어 한쪽 집단에는 각성제인 아드레날린을 투여하고, 다른 한쪽 집단에는 가짜 위약(placebo)을 투여한 후, 미로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위약을 투여한 경우에는 일반인집단이 반사회성집단보다 약간 우수한 수행성적을 보여주었지만, 아드레날린을 투여한 경우에는 반대로 반사회성집단이 일반인집단 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수행성적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의 한가지 의미는 반사회성의 성격특질을 가진 사람들도 각성수준이 인위적으로 증가되면 학습과제를 매우 잘 수행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학습능력에서 결합을 가지는 것은 Eysenck의 이론대로 각성수준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사회적인 성격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소극적 회피학습에서 결합을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비행청소년들을 학교나 가정에서 벌하는 것은 그들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비행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소극적 회피학습에 결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벌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비행청소년들이 각성수준이 낮아서 소극적 회피학습에서 결합을 보이는 것이라면 그들의 각성수준을 높여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

하여 우선 Raine & Venables(1987)와 Jutai & Hare (1983)는 반사회적 성격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소극적 회피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학습과제에서도 결함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이들의 결과는 반사회적 성격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므로서 상 혹은 정적 강화가 주어지는 ‘적극적 접근학습(active approach learning)’에서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우수한 수행성적을 보인다는 것 이었다. 또한 Newman(1987)과 Shapiro et al.,(1988)는 어떤 행위를 하면 보상(reward)과 벌(punishment)이 모두 주어질 수 있는 경우에 반사회적 성격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 행위의 보상측면에만 주의를 너무 기울인 나머지 벌에 대해 소홀해져서 소극적 회피학습이 잘 안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예를 들어 절도행위는 성공하면 금전적인 보상이 생기고 실패하면 벌이 주어지는 행위인데, 절도범들은 성공하므로서 생기는 보상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절도를 하지 않으므로서 벌받지 않게 되는 경우(회피학습)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절도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Scerbo et al. (1990)은 어떤 행위를 회피하면 단지 벌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이 함께 주어지는 ‘적극적 회피학습(active avoidance learning)’을 실시한 결과 반사회성의 피험자들이 일반인 피험자들보다 과제를 더욱 잘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의 학습연구들을 종합하면 반사회적인 성격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각성수준이 낮고, 낮은 각성상태에서는 행위를 하므로서 생기는 보상에만 주의가 집중되어 회피학습에서 결함을 보이는데, 회피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각성수준이 증가하여 우수한 회피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을 회피하는 경우 단지 벌을 면제하는데 그치지 말고, 칭찬이나 적극적인 보상을 해주므로서 그들이 점차 비행이나 범죄행위를 회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은 ‘보고 배운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관찰학습은 네가지의 연쇄적 조건이 충족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 네가지 연쇄적인 조건은 (1)본보기 인물(model)의 행동에 대한 주의집중(attention); (2)관찰된 행동에 대한 기억; (3)기억된 행동에 대한 모방; (4)모방된 행동에 대한 강화(reinforcement)이다. 특히 TV 폭력물의 악영향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는데, 일반적인 결론은 첫째, TV 폭력물은 범죄나 비행을 유발할 수 있고, 둘째, 이러한 TV 폭력물의 악영향은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며, 셋째, 특히 이미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행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Friedrich-Cofer & Huston, 1986; Huesmann et al., 1987).

연령의 효과

지금까지 범죄, 비행, 그리고 공격성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이론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요인들 중에 범죄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이 몇가지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요인이 연령이다.

연령에 따른 범죄발생율을 보면 어떤 국가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범죄발생율은 10대 초반에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10대 후반에 가장 최고치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인다. 또한 성별을 분리하는 경우에 여자들에 의한 범죄가 남자들에 의한 범죄보다 전반적으로 적은 숫자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양상을 남녀에서 모두 동일하다(McClintock & Avison, 1968). 범죄율에 대한 연령의 효과가 지역, 시대, 성별집단, 범죄종류 등에 걸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이 현상을 ‘연령효과의 불가변성(invariance of age effect)’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연령추세에 대하여 두가지의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가지는 십대 후반에 범죄발생율이 최고를 기록하는 이유이고, 둘째는 그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desist) 이유이다.

그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최근에 Moffitt(1993)은 비행청소년들중에는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의 두가지 부류가 있고, 이 두가지 부류에 의해서 연령추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평생지속형의 비행청-

소년들은 전체 비행청소년들의 약 5% 정도로 추산되는데(Patterson, 1982), 이들은 주의력 결핍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e disorder), 행동장애(conduct disorder), 혹은 다른 기질적인 범죄소양을 가진 자들로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반사회적인 행동양식을 보이게 되고, 그러한 양상이 평생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에 청소년기 제한형의 비행청소년들은 주로 동료집단에 존재하는 기질적인 비행청소년의 행동양식을 모방하고, 그러한 모방에 의해 또래들로부터 긍정적인 보상 혹은 강화를 경험하므로서 한시적으로 비행청소년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보상과 긍정적인 강화가 주어지는 행동양식이 바뀌게 되어 점차로 비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준법의 이유

준법의 이유에 관한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사람들 이 법을 지키는 요인을 세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고, 둘째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며, 셋째는 개인적인 도덕관념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처벌이 심각할수록 사람들은 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또한 주변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수록 음주운전을 하게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고,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을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하면 역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준법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견해는 앞서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가 조직화되고 안정될수록 사회와 개인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그 강화된 유대를 통하여 사회가 개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 할 수 있는 수단과 기능이 증가하여 범죄가 감소하고, 준법성향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준법 하는 이유는 그들이 법에 대하여 두가지중 한가지의 가치관 혹은 성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Carroll, 1987; Tyler, 1990). 하나는 이해타산성이고, 다른 하나는 규범성이다.

준법을 실행하는 두가지 성향

이해타산성(instrumental perspective)을 가진 사람은 준법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개인적 이득과 가능한 손해를 비교하여 이득이 큰 쪽의 행위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때 처벌의 강도와 처벌될 가능성은 법을 어기는 경우의 잠재적 손실로서 간주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처벌의 두려움이 가장 큰 준법요인이다. 예를 들어, 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경우, 법에 대하여 이해타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탈세를 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더 큰 범죄행위를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법에 대하여 이해타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준법여부는 외부적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법에 대하여 이러한 이해타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강제성에 의존하여 법치를 구현할 수 밖에 없다. 이 관점은 또한 법과 처벌의 제지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관관이다.

법에 대하여 규범성(normative perspective)을 가진 사람은 준법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법은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하므로 개인은 준법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적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탈세를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외부적 상황에 따라 준법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준법의 당위성이 규범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법에 대한 사람들의 규범적 성향을 형성하는 요인은 두가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나는 법이 가지는 도덕성(morality) 및 형평성(equity)이고, 다른 하나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사법부, 행정부, 경찰, 등)이 가지는 권위의 정당성(legitimacy)이다. 법의 도덕성과 형평성 여부에 의하여 사람들은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지각하거나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이 기본권(e.g.,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부도덕성) 구조적으로 특정계층의 사람들을 차별을 한다면(불형평

성) 사람들은 법이 정의롭지 않다고 지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준법에 대한 규범적 성향을 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법이 사람들의 형평개념과 동떨어진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의 도덕성이 유실되어 규범적 성향을 해칠 수 있다(Hauge, 1994). 예를 들어 시민들은 납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주목하는 반면, 세법은 수직적 형평성을 무시하고 수평적 형평성만을 추구한다면, 사람들은 세법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탈세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에 대한 사람들의 규범적 성향을 형성하기 위해서 법은 사람들이 가지는 도덕관념 및 형평관념에 기초하여야 한다.

법집행 기관이 가지는 권위의 정당성은 그 기관이 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가장 흔한 예는 우리가 거리에서 자주 목격하는 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실랑이다. 그러한 실랑이는 경찰관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은 행동통제를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 그런데 그 수단을 사용하는 기관이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공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준법정신을 폐손할 수 있다. 사람들이 법집행 기관에게 인정하는 정당성과 권위는 상당부분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경찰이나 사법부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경찰이나 사법부의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경찰이나 사법부의 정당성이 인정될수록 사람들은 준법에 관한 규범적 성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준법의 이유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타산적인 성향이나 규범적 성향에 의해 준법한다. 이해타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준법한다. 반면에 규범적 성향은 법의 형평성(도덕성)과 법집행 기관이 가지는 권위의 정당성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타산적 성향에 의해 준법한다면,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권력과 시민이 언제나 긴장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규범적 성향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준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성향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의 형평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고, 법집행 기관의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사람들이 이해타산적인 성향(처벌의 두려움)에 의해 준법하는지에 관한 최근의 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준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규범적 성향이 법의 형평성과 법집행 기관의 정당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규범적 성향에 의해 준법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실증적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처벌의 두려움

처벌의 두려움이 준법의 이유라고 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이해타산에 의해 준법한다는 경제학적 관점이다. 처벌의 두려움은 범법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준법이 범법보다 이득으로 인식되게하는 기능을한다고 간주된다. 이 관점은 또한 처벌의 제지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이기도 하다. 이 관점에 의하면 처벌확률이 높고, 처벌의 강도가 셀수록 준법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관점의 문제점은 이 관점에 기초한 법치와 사회통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높은 처벌확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감시와 단속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감시와 단속은 정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조장하여 범법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정부는 더 심한 감시, 단속, 처벌을 해야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정부가 국민들의 준법성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정책을 실시해야하는지는 우선 국민들이 왜 준법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준법하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처벌확률 및 처벌강도와 범법/준법의 정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

하는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처벌의 제지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다. 법과 처벌이 제지효과를 가진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준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에 많은 학자들이 처벌확률 및 처벌강도와 준법성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들은 각기 다른 형사정책을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 혹은 다른 고장들을 비교하거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처벌확률 및 강도를 측정하여 그 지각된 처벌인식과 그들의 범법행위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었다. 이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는, (1)처벌의 강도와 범법/준법행위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고, (2)처벌확률과 범법/준법행위 사이에는 미약한 관련성이 있는데, (3)도덕관념이나 사회적 체면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미약한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Teevan, 1976; Paternoster et al., 1983; Tittle, 1980; Saltzman et al., 1982). 다시 말해서, 처벌확률과 범법/준법행위 사이의 미약한 관계는 처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체면 혹은 도덕적 자기개념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Gertz and Gould(1995)도 61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래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처벌확률과 범법/준법행위 사이의 미약한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로써 과거에 범법한 경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특정한 범법행위를 부도덕하다고 인지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법을 엄하게 집행한다고 해서 준법행위(범법행위)가 증가(감소)하지 않으며, 법의 엄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법/준법행위에 대한 주변사람들(친구, 친지, 가족 등)의 태도와 행위자 당사자가 가지는 도덕적 자기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의 대다수의 국가들, 특히 대부분의 서구사회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Haney & Logan, 1994).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내 몇개 주의 대법원에서는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이상한(cruel and unusual)’ 처벌이라는 이유로 미연방헌법 수정 제8조(the Eighth Amendment)에 위배된다는 위헌판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미국국민들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행해진 조사에 의하면 텍사스 주민의 85%, 캘리포니아 주민의 80%가 사형제도에 찬성한다(Kaplan, 1990).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혼히 사형의 제지효과를 그 이유로서 제시한다. 심지어 1994년 11월에 오하이오 지방법원(County Court)에서 Anthony Calabrese 판사는 이중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처형장면을 TV로 생중계할 것을 명하였다. Calabrese 판사의 이유는 미래의 홍악범들에게 확실한 경종을 울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범죄감소효과를 가지는지를 검토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Bowers, 1988; Bailey & Peterson, 1989). Sellin(1968), Zeisel(1976), Bowers & Pierce(1980)는 미국내의 각 주들을 비교한 결과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주에서 오히려 범죄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같은 결과가 Lempert(1981)와 Bruck(1985)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Bailey(1990)는 1976년과 1987년 사이에 TV에 보도된 사형수 처형소식(뉴스)과 뉴스보도 이후에 발생한 범죄를 조사한 결과 처형소식이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범죄발생율을 비교한 연구들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Archer & Gartner, 1984; Wilkes, 1987). Zimring & Hawkins(1986)는 사형제도의 제지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한 후, “사형이 홍악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기우제가 비를 오게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같다(the death penalty is about as relevant to controlling violent crime as rain-dancing is to controlling the weather)”고 결론지었다(p.14). 사형제도와 같은 엄격한 법의 적용이 제지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첫째로 법의 객관적 심각성이 범죄자에 의해 지각된 주관적 심각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둘째로 특히 범행 순간의 주관적 심각성은 평상시의 주관적 심각성과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Glasser et al., 1983; Erickson & Gibbs, 1980; Klepper & Nagin, 1989).

앞서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을 설명하면서 범죄자들은 소극적 회피학습에서 결합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처벌의 제지효과는 그러한 소극적 회피학습에 의존한다. 따라서 소극적 회피학습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처벌의 제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범죄성을 가진 사람들과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히 처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생리심리학 연구들이 있다. 인간과 동물은 소위 ‘놀람반사(startle reflex)’라고 불리우는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공포심이 생기거나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예전치 못한 소음이 들리면 놀람반사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놀람반사에 의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눈을 깜박거리는 것이다. 눈깜박임과 같은 놀람반사는 공포, 혐오, 불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상태에서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준비상태에 놓이게 되고, 유쾌하거나 즐거운 감정상태에서는 그 발생이 억제된다고 한다(Vrana, Spence, & Lang, 1988; Davis, 1989). Patrick(1994)은 눈깜박임과 같은 놀람반사를 이용하여 일반인들과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이 처벌이 가해지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실험을 통하여 비교해본 결과,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은 처벌이나 혐오스러운 자극이 주어지는 동안 놀람반사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사실이 암시하는 것은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들에게는 처벌이나 혐오자극이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벌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의 범죄제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Vaughn, Huang, & Ramirez(1995)는 일본의 마약사범의 실태와 마약단속법의 변천상황을 19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상세히 분석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마약사범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차대전 직후에 각성제(stimulants) 중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최근에 들어 다시 중독자가 늘었다고 한다. 이 차대전 직후 각성제 중독자의 증가는 정부가

전쟁수행을 위해 각성제를 대량 제조하여 유포한 결과 때문이며, 최근에 나타나는 중독현상은 주로 제약회사들의 합법적인 신제품개발(피로회복제, 스테미너보강제, 숙취회복제,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일본에서 처벌을 강화한 마약단속법과 그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긍정적 반응은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narcotics)의 경로를 차단하려는 미국정부의 압력과 미국내에서의 마약퇴치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중독자를 많이 유발하는 마약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마약의 제조원과 유통구조는 거의 일본내의 마약실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마약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도시의 황폐화 등이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과 영향으로 처벌을 강화하므로써 마약소비를 단속하려는 일본의 최근 경향은 동양사회의 특징인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의 전통을 약화시키므로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양사회의 질서는 전통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통제보다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을 비롯한 비공식적 사회구조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유지되어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약유통을 사전에 철저히 봉쇄할 필요는 있지만, 마약 사용자를 제도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도로 도시화된 현대의 동양사회에서도 전통적인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효율적인 질서유지의 근간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지만, Vaughn et al.(1995)의 이러한 관점은 앞서 법의 엄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법/준법행위에 대한 주변사람들(친구, 친지, 가족 등)의 태도와 당사자가 가지는 도덕적 자기개념이라는 연구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준법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엄격한 법적용이 제지효과를 기대만큼 크게 가지지 못한다고 사료된다. 준법행위는 처벌강도와 처벌학률 등과 같은 외부

적 요인보다는 내면화된 규범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러한 내면화된 규범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법에 대한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의 효과

법의 도덕성(morality)이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논리성, 적절성, 그리고 공정성(fairness)을 의미한다 (Robinson & Darley, 1995). 특정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하거나 관대한 경우에 그 법은 공정성을 잃게되고 도덕적으로 결함을 가지는 법이 된다. 예를 들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고, 과실에 의해 사고를 낸 전철기관사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면 법의 도덕성이 의심받게 된다. 따라서 도덕성의 개념은 행위와 처벌 사이의 균형에 관한 개념이다. 반면에 법의 형평성(equity)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의 균형성을 말한다.

비난가능성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범법에 대한 처벌의 정도는 일반적인 보통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처벌의 수준을 반영해야한다는 이론적 관점을 유럽에서는 ‘거울이론(mirror theory)’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정당한 댓가 이론(just deserts theory)’이라고 부른다(Hauge, 1994).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따라서 법과 처벌은 국민 대다수의 태도와 그들의 태도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법은 그 정당성(legitimacy)을 국민들 속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법정에서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을 비교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그 두형량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Walker & Hough, 1988). 그런데 노르웨이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한 법정형량이 1964년 이전에는 최고 6개월 징역이었는데, 그 이후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84년부터는 21년의 징역형이 법정 최고형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일반 사람들의 통념이 변해가는 속도보다 처벌의 강도가 훨씬 빨리 증가하여 사회통념과 법 사이에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괴리에 의하여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Ødegård(1995)는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의 13개국의 자료를 기초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의 심각성이 국민들의 일반적 태도를 반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형법은 사고나 가해의 종류를 대체로 4가지로 단계화하고 있다: (1)잘못이 없는(faultless) 순수한 사고; (2)주의의무의 태만(negligent)에 의한 가해 혹은 사고; (3)경거망동이나 경솔(reckless)에 의한 가해 혹은 사고; (4)사전에 위험의 존재를 숙지한 의도적인(intentional) 가해 혹은 사고. 예를 들어 타인의 집이나 토지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첫번째(순수한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주에 대하여 손상을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책임이 귀착되는 반면, 피해자의 동의를 결여한 강간의 경우에는 세번째(경솔)와 네번째(사전 숙지)의 경우만 가해자에게 책임이 귀착된다. Robinson & Darley(1995)는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 사고나 범죄의 죄가를 판단할 때 형법이 정한 단계 및 책임귀인과 일치한 판단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상적인 사고/범죄 시나리오들을 이용하여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는 일반시민들의 판단과 법이 일치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동의를 결여한 강간의 경우, 일반시민들은 태만에 의해 동의를 결여한 경우에도 책임귀속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미국 형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태만, 경솔, 숙지에 의한 경우에 동일하게 엄한 처벌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동의에 의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아야하고, 태만, 경솔, 숙지에 의한 경우에 각기 다른 처벌을 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위에서 설명한 Ødegård(1995)의 연구와 더불어 법의 도덕성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연구의 대표적 예이다.

Grasmick & Green(1980)과 Jacob(1980)은 미국에서 각각 400명과 17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현행법의 도덕성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그 법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0.55$ 와 $r=0.47$).

Meier & Johnson(1977)은 632명의 성인을 조사하여 대마초 흡연을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하는 사람일수록 대마초 흡연을 적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r=0.21$). Silberman(1976)와 Tittle(1980)은 각각 174명의 대학생과 1,993명의 성인을 조사하여 현행법을 부도덕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준법의지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준법의지 및 준법행위가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함은 인과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의 부도덕성에 대한 지각이 준법의지를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낮은 준법의지를 가진 사람이 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현행법이 부도덕하다고 응답하는 것인가가 분명치 않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현행법이 부도덕하다는 응답은 낮은 준법의지에 대한 평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에 소개되는 연구는 조사방법이 아닌 실험방법을 통하여 법의 불형평성이 준법행위를 해친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다. 류윤상, 박광배, 김유진(1996, 심사중)은 실험을 통하여 세법의 형평성이 파기되면 탈세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서로 수입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을 수직적 형평성, 수입의 정도가 유사한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을 수평적 형평성, 그리고 개인과 정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형평성을 교환적 형평성이라 정의한 후, 각 형평성이 파기된 조건에서의 탈세행동과 그러한 형평성 파기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탈세행동을 비교한 결과 형평성의 종류를 불문하고 형평성이 파기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탈세행동이 명확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법집행 기관의 정당성과 준법의 관계

Gibson(1967)은 영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에 대한 지지도와 청소년 비행 사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r=0.41$). Jaros & Roper(1980)은 미국에서 600명의 대학생을

조사하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의 정도와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려는 의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Tittle(1980)은 미국에서 1,993명의 성인을 조사하여 법집행 기관의 권위성에 대한 인정도와 가벼운 범법행위 사이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Aberbach & Walker(1970)는 855명의 디트로이트 주민을 조사하여 흑인들 사이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폭동하려는 의지와 강한 관련성이 있고, 백인들 사이에서는 극단주의자(백인우상주의자)에게 투표하려는 의지와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정부, 사법부, 경찰 등에 대한 불신, 지지도, 권위인정이 데모, 폭동의지, 폭력적인 군중집회에 대한 태도, 과업, 군대와 병역에 대한 태도, 등과 관련을 가진다는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Craig & Wald, 1985; Citrin, 1977; Muller, 1972, 1977, 1979; Muller et al., 1982; Seligson, 1980; Useem, 1982; Wesbrook, 1980; Wright, 1976),

앞서 인용한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에 관한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들도 인과방향의 애매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yler(1990)는 Chicago에서 2년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첫해에는 1,575명을 조사하고, 그중에 804명을 다음해에 재조사하였다. 첫해에 경찰과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응답자들의 경험과 평가를 조사하고, 두번째 해에 그들의 준법행위를 조사한 후, 그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준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통제한 후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상관관계는 경찰과 사법부가 가지는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가 준법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경찰/사법부의 정당성과 함께 유의미한 영향력을 산출한 요인들을 영향력의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이, 개인적 도덕관념, 성별, 주위사람들의 인정. 즉, 나이가 많을수록, 도덕관념이 강할수록, 여자 일수록, 주위사람들의 준법의지가 강할수록 준법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처벌의 두려움, 정치상황

에 대한 평가, 경제적 지위, 교육정도, 보수성 등은 위의 유의미한 요인들이 가지는 영향력에 더하여 추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즉, 사람들이 경찰 및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할수록 준법성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Tyler(1990)는 한결음 더 나아가서 경찰/사법부에 대한 권위 평가와 준법행위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다시 말해서 권위 평가가 높으면 준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관계가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강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약한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자료분석 결과, 권위 평가와 준법행위 사이의 관계는 경찰 및 사법부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경찰과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는 권위 평가와 준법행위 사이의 관계가 강하게 도출된 반면, 경찰과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관계가 약하게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준법의 이유에 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처벌의 제지효과를 부정하고 있고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준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들이 법의 관대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들은 동시에 법의 도덕성, 형평성, 그리고 법집행 기관이 가지는 권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법이 범법행위에 대하여 엄해야하느냐 혹은 관대해야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엄하든 관대하든 국민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관념을 예민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이 이론적, 관념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과 형평관념에 기초해야한다는 것이다. Robinson & Darley(1995)는 이러한 철학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p. xv):

The community's intuitions on blame and punishment are not matters that one need speculate about. Modern behavioral science is well equipped to determine with some reliability the rules that laypersons use in

assessing blame and deserved punishment. Basing criminal law formulation on speculation rather than fact suggests that the criminal law community is out of touch with modern science in an important and damaging way.(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처벌/비난의식은 관념적으로 추측될 문제가 아니다. 현대의 행동과학은 처벌 및 비난의 강도를 정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원칙들을 신뢰롭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 형법의 처벌규정들이 사실보다는 관념적인 추측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법조계가 현대과학과 심각하게 우려되는 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 론

법적으로는 범죄행위와 그 행위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행위의 종류와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중범죄, 경범죄, 대인범죄, 대물범죄, 폭력범죄, 와이트 칼라범죄, 정치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문은 행위의 원인과 이유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학문의 궁극적 관심은 범죄행위 그 자체라기 보다는 ‘범죄성(criminality)’이다. 따라서 학문적으로는 살인, 강간, 횡령 등의 중범죄와 교통법규위반, 가벼운 탈세, 고성방가 등의 경범죄 등을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사회의 질서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소수로 발생하는 중범죄가 다수로 발생하는 경범죄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위협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이유와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Gottfredson & Hirschi(1990)와 같은 범죄학자들은 범죄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준법행위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범죄행위 혹은 범법행위가 경범죄, 중범죄, 대물범죄, 혹은 대인범죄에 귀착하는지의 여부는 많은 경우에 상황적인 우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순절도를 계획하였다가 절도행위의 도중 발각되면 강도나 살인을 범하게 되는 예가 많다. 대부분의 살인은 우발적으로 혹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사체를 토막내거나 유기하는 것이 특별히 악마적인 속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증거를 없애려는 노

력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상습적인 범죄자들은 특정한 종류의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범하기 보다는, 크고 작은 각종 범죄를 무작위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형사범은 2개 이상, 흔히 7-8개 이상의 죄목이 병합하여 기소된다(가택침입과 강간, 절도와 살인, 횡령과 유괴, 등). 따라서 범죄성에 주목하는 학문적 관점에서는 각종 범죄구분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범죄심리학을 비롯한 범법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살인, 강간, 강도 등의 심각한 폭력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에 준법의 이유에 관한 연구들은 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준법행위에 주목하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일견 범법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과 준법의 이유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법적 행위에 대한 별개의 연구들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각종 범죄구분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의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학문적 전통이 법적 행위를 조망하는 개념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중범죄일수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급박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인식에 의하여 원인규명에 주목하는 범법연구들이 마치 중범죄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유규명에 주목하는 준법연구들이 마치 일상적인 준법행위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범법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이 주목하는 범죄성과 준법의 이유에 관한 연구들이 주목하는 준법성(규범적 성향)은 서로 다른 별개의 차원이 아니라, 같은 차원의 양극을 구성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두 부류의 연구들에서 얻어진 지식은 서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반사회적 성격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므로서 상 후은 정적 강화가 주어지는 '적극적 접근학습'에서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우수한 수행성적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범죄연구의 결과는 준법의 이유에 관한 연구들의 기본적인 목적, 준법의 이유를 파악하여 그것을 활성화하므로서 자발적인 준법행위를 권장하려는 의도와 매우 잘 일치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준법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행위자를 미래지향적, 합목적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은 법의 기본적인 인간관 및 행위에 대한 자유의지론적 전제와 매우 잘 합치한다. 준법의 이유에 관한 연구들이 법의 도덕성과, 형평성, 그리고 법집행 기관에 대한 권리인정을 법에 대한 사람들의 규범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들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 요인들을 규범성에 대한 결정론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연구들이 강조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거울이론'이 시사하듯이 국민들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규범성을 법과 법집행기관이 잘 반영할 때 그러한 규범성이 준법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법적 행위의 자유로운 주체이고, 이 주체는 행위를 통하여 법과 제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표현한다는 관점이다.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이 국민들의 관념과 일치하고, 국민들이 경험에 의하여 법집행 기관이 공정하며 정직하다는 믿음을 가질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의 준수에 대한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고 자발적인 준법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준법행위는 국가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참 고 문 헌

- 박광배(1995). *法심리학*. 서울: 정민사.
류윤상, 박광배, 김유진(1996). 탈세에 대한 형평성
효과. *한국사회심리학회지*: 10, 2, 23-33
Aberbach, J. D. & Walker, J. L.(1970). Political trust
and racial ideolog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1199-1219.
Allen, G.(1976). Scope and methodology of twin
studies. *Acta Geneticae Medicae Gemellologiae*,
25, 79-85.
Archer, D. & Gartner, R.(1984). *Violence and Crime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Bailey, W. C.(1990). *Murder, capital punishment, and*

- television: Execution publicity and homicide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628-633.
- Bailey, W. C. & Peterson, R. D.(1989). Murder and capital punishment: A monthly time-series analysis of execution public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722-743.
- Bowers, W.(1988). The effect of executions is brutalization, not deterrence. In K. Haas & J. Incardi (Eds.), *Challenging Capital Punishment: Legal and Social Science Approach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Bowers, W. & Pierce, G.(1980). Arbitrariness and discrimination under post-Furman capital statutes. *Crime and Delinquency*, 26, 563-635.
- Bruck, D.(1985). The death penalty: An exchange. *New Republic*, May, 20-21.
- Buss, A. H.(1966). *Psychopathology*. New York: Wiley.
- Carroll, J. S.(1987). Compliance with the law: A decision-making approach to taxpaying. *Law and Human Behavior*, 11, 319-335.
- Christiansen, K. O.(1977a). A review of criminality among twins. In S. A. Mednick & K. O. Christiansen(Eds.), *Biosocial Bases of Criminal Behavior*. New York: Gardner Press.
- Christiansen, K. O.(1977b). A preliminary study of criminality among twins. In S. A. Mednick & K. O. Christiansen(Eds.), *Biosocial Bases of Criminal Behavior*. New York: Gardner Press.
- Citrin, J.(1977). Political alienation as a social indicator: Attitudes and 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 381-419.
- Cloward, R. A. & Ohlin, L. E.(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A Theory of Delinquent Gangs*. New York: Free Press.
- Cohen, A. K.(1955).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Glenco, Ill: Free Press.
- Craig, S. C. & Wald, K. D.(1985). Whose ox to gore? A com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discontent and political violenc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8, 652-662.
- Darwin, C. R.(1859). *The Origin of Species*. London: John Murray.
- Davis, M.(1989). Neural systems involved in fear-potentiated startle. In M. Davis, B. L. Jacobs, & R. I. Schoenfeld(Ed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563: Modulation of defined neural vertebrate circuits(p.165-183). New York: Author.
- Dawkins, R.(1989). *The Selfish Gene*(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urkheim, E.(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lated by John A. Spaulding and George Simpson. Glencoe, Ill: Free Press.
- Elliott, D., Huizinga, D., & Ageton, S.(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 Erickson, M. & Gibbs, J.(1980). Punishment, deterrence, and juvenile justice. In D. Schichor & D. H. Kelly(Eds.), *Critical Issues in Juvenile Delinquency*. Lexington,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 Eysenck, H. J.(1977). *Crime and Personality*. St. Albans, England: Paladin.
- Falconer, D. S.(1981). *Introduction to Quantitative Genetics*. London: Longman.
- Friedrich-Cofer, L. & Huston, A. C.(1986).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A rejoinder. *Psychological Bulletin*, 100, 364-371.
- Gertz, M. G. & Gould, L. C.(1995). Fear of punishment and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criminal behavior: A research not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 377-384.
- Gibson, H. B.(1967). Self-reported delinquency among schoolboys and their attitudes toward the po-

- l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6, 168-173.
- Glassner, B., Ksander, M., Berg, B., & Johnson, B. (1983). A note on the deterrent effect of juvenile vs. adult jurisdictions. *Social Problems*, 31, 219-221.
- Goleman, D.(1987). The bully: New research depicts a paranoid, lifelong loser. *New York Times*, 19, 23.
- Gottfredson, M. R. & Hindelang, M. J.(1977). A consideration of telescoping and memory decay biases in victimization survey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5, 205-216.
- Gottfredson, M. R.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G. & Green, D. E.(1980). Legal punishment, social disapproval, and internalization as inhibitors of illegal behavior.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1, 325-335.
- Grove, W. M., Eckert, E. D., Heston, L., Bouchard, T. J., Segal, N., & Lykken, D. T.(1990). Heritability of substance abuse and antisocial behavior: A study of monozygotic twins reared apart. *Biological Psychiatry*, 27, 1293-1304.
- Hamilton, W. D.(1964). The genetic evolution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7, 1-52.
- Haney, C. & Logan, D. D.(1994). Broken promise: The Supreme Court's response to social science research on capital punish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50, 75-101.
- Hare, R. D.(1983). Diagnosis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two prison population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887-890.
- Hare, R. D. & McPherson, L. M.(1984). Violent and aggressive behavior by criminal psychopath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7, 35-50.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uesmann, L. R., Eron, L. D., & Yarmel, P. W. (1987).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232-240.
- Jacobs, H.(1980). Deterrent effects on formal and informal sanctions. In J. Brigham & D. W. Brown(Eds.), *Policy Implementation*.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Jaros, D. & Roper, R.(1980). The U.S. Supreme Court: Myth, diffuse support, specific support, and legitimacy. *American Politics Quarterly*, 8, 85-104.
- Jutai, J. W. & Hare, R. D.(1983). Psychopathy and selective attention during performance of a complex perceptual-motor task. *Psychophysiology*, 20, 146-151.
- Kaplan, D. A.(1990). Breaking the death barrier. *Newsweek*, 115, 72-73.
- Kassin, S. M. & Wrightsman, L. S.(1988). *The American Jury on Trial*. New York: Hemisphere.
- Klepper, S. & Nagin, D.(1989). The deterrent effect of perceived certainty and severity of punishment revisited. *Criminology*, 27, 721-746.
- Kornhauser, R.(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hnen, R. G. & Skogan, W. G.(1981). *The national crime survey: Working papers*. Vol. 1. Washington: U. S. Department of Justice.
- Lemert, E. M.(1972).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empert, R.(1981). Desert and deterrence: Assessing the moral bases of the case for capital punishment. *Michigan Law Review*, 79, 1177-1231.
- Lykken, D. T.(1957). A study of anxiety in the socio-

- pathic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5, 6-10.
- McClintock, F. H. & Avison, H. H.(1968). Crime in England and Wales. London: Heinemann.
- McCord, W.(1982). The Psychopath and Milieu Therapy: A Longitudinal Study. Orlando, FL: Academic Press.
- Mednick, S. A., Gabrielli, W. H., & Hutchings, B. (1984). Genetic influences in criminal convictions: Evidence from an adoption cohort. *Science*, 224, 891-894.
- Meier, R. F. & Johnson, W. T.(1977). Deterrence as social control: The legal and extralegal production of conform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292-304.
- Merton, R. K.(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Moffitt, T. E.(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Bulletin*, 100, 674-701.
- Mueller, E. N.(1972). A test of a partial theory of potential for political viol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 928-959.
- Mueller, E. N.(1977). Behavioral correlates of political suppor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454-467.
- Mueller, E. N.(1979). Aggre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uller, E. N., Jukam, T. O., & Seligson, M.(1982). Diffuse political support and anti-system political behavior: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 240-264.
- Newman, J. P.(1987). Reaction to punishment in extroverts and psychopaths: Implications for the impulsive behavior of disinhibited individua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464-480.
- Nietzel, M. T.(1979). Crime and Its Modification: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New York: Pergamon Press.
- Ødegård, E.(1995). Legality and legitimacy: On attitudes to drugs and social sanctions.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5, 525-542.
- Paternoster, R., Saltzman, L. E., Waldo, G. P., & Chiricos, T. G.(1983). Estimating perceptual stability and deterrent effects: The role of perceived legal punishment in the inhibition of criminal involvement.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4, 270-297.
- Patrick, C. J.(1994). Emotion and psychopathy: Startling new insights. *Psychophysiology*, 31, 319-330.
- Patterson, G. R.(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 Plomin, R., Chipuer, H. M., & Loehlin, J. C.(1990). Behavioral genetics and personality. In L. A. Pervin(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 Raine, A.(1993). The Psychopathology of Crime: Criminal Behavior as a Clinical Disorder. San Diago: Academic Press.
- Raine, A. & Venables, P. H.(1981). Classical conditioning and socialization - A bio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 273-283.
- Robinson, P. H. & Darley, J. M.(1995). Justice, Liability, & Blame: Community Views and the Criminal Law. Boulder: Westview Press.
- Saltzman, L., Paternoster, R., Waldo, G. P., & Chiricos, T. G.(1982). Deterrent and experiential effects: The problem of causal order in perceptual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 172-189.
- Scerbo, A., Raine, A., O'Brien, M., Chan, C. J., Rhee, C., & Smiley, N.(1990). Reward domi-

- nance and passive avoidance learning in adolescent psychopath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451-463.
- Schacter, S. & Latane, B.(1964). Crime, cognition, and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In M. R. Jones(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chneider, A. L.(1977). The Portland forward records check of crime victims. Washington: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 Seligson, M. A.(1980). Trust, efficacy, and mod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 study of Costa Rican peasan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 75-98.
- Sellin, T.(1938). *Culture Conflict and Crime*.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 Sellin, T.(1968). *Capital Punishment*.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 Shapiro, S. K., Quay, H. C., Hogan, A. E., & Schwartz, K. P.(1988). Response perseveration and delayed responding in undersocialized aggressive conduct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371-373.
- Silberman, M.(1976). Toward a theory of criminal deterr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442-461.
- Teevan, J. J.(1976). Subjective perception of deterrence(continued).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3, 155-164.
- Tittle, C. R.(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A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 Trivers, R. L.(1971).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Quarterly Review of Biology*, 46, 35-57.
- Tyler, T. R.(1990).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Useem, B.(1982). Trust in government and the Boston anti-busing movement. *Western Politics Quarterly*, 35, 81-91.
- Vaughn, M. S., Huang, F. F. Y., & Ramirez, C. R. (1995). Drug abuse and anti-drug policy in Japa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5, 491-524.
- Vold, G.(1979). *Theoretical Crimi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rana, S. R., Spence, E. L., & Lang, P. J.(1988). The startle probe response: A new measure of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487-491.
- Walker, N. & Hough, M.(1988). *Public Attitudes to Sentencing-Surveys from Five Countries*. Aldershot: Gower Publishing Company.
- Wesbrook, S. D.(1980). Sociopolitical alienation and military efficiency. *Armed Forces and Society*, 6, 170-189.
- Wilkes, J.(1987). Murder in mind. *Psychology Today*, June, 26-32.
- Wilson, E. O.(1975).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olfgang, M. & Ferracuti, F.(1967). *The Subculture of Violence: Towards an Integrated Theory in Criminology*.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 Wright, J. D.(1976). *The Dissent of the Governed: Alien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Academic Press.
- Zeisel, H.(1976). The deterrent effect of death penalty: Facts and faiths. *Supreme Court Review*, 317-343.
- Zimring, F. & Hawkins, G.(1986). *Capital Punishment and the American Agend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Causes of Law Breaking and the Reasons for Law Observance

Kwang Bae.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studies on the causes of law breaking and the reasons for law observance. Rule by law will be less cost-effective when it relies on compulsory and coercive enforcement of laws than when it is based on voluntary compliances. Governing by coercion consumes large amounts of public resources and such societies would be in constant peril of disequilibrium and instability. Studies on the reasons for voluntary compliances would be very valuable to achieve social stability without causing reactive antagonism against the legal authorities. Studies suggest that fear of punishment is not a major reason for law observance. Morality and equity of laws and legitimacy of law enforcement people such as polices and judges seem to be the major determinants of voluntary compliances with laws.